# 성주군 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| 의 안<br>번 호 | |
|---|---|

제출년월일 : 2010년 9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가.「성주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조례」가 제정(계획)함에 따라 기존의 「성주군교육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」를 「성주군 별고을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로 전부 개정하여, 교육발전 기금은 장학금 재원으로만 활용하여 기금 사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함.

## 2. 주요내용

○ 장학기금의 일정금액 조성으로 장학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 마련

○ 장학금 심의 위원회의 구성 등 장학금 지급의 법적근거 마련으로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의 객관성과 다양성 확보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: 2011년도 예산에 반영, 예산담당부서와 합의완료

다. 기 타 :

(1) 입법예고('10. 8. 17 ~ '10. 9. 5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(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성주군 조례 제 호

# 성주군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**성주군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**

성주군 별고을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제142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에 의거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발굴·육성하여 교육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성주군 별고을 장학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,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금의 조성 및 관리)**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성주군 별고을 장학기금과 그 이자수입
2.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
3.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
4. 기타 수입금

② 제1항에 의거 설치된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며,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.

③ 성주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일정금액을 출연할 수 있다.

**제3조(기금의 존속기한)** 기금의 존속기한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.

**제4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** ①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 별고을 장학기금 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4명과 위촉직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으로 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당연직은 기획감사실장, 재무과장으로 한다.
2. 위촉직은 성주교육지원청 과장 1명을 포함하여 총5명 이내로 하되, 교육 분야의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로 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**제5조 (위원장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 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6조 (위원의 해촉)**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
2.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(6개월이상)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3.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
4.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였을 때

② 위원이 임기 만료전에 해촉된 때에는 군수가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다.

**제7조(위원회의 기능)**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의 조성 및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
2.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
3.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범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
4.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**제8조(회의 및 간사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인을 두되, 간사는 업무담당이 되며,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.

**제9조(수당 등의 지급)**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「성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**제10조(기금관리공무원 지정)**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.

1. 기금운용관 : 총무과장
2. 기금출납원 : 교육복지 담당

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**제11조 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**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**제12조(장학생 기준 및 선발)** ① 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. 다만, 대학생은 장학금 신청서로 갈음한다.

1. 관내 고등학생 이하 성적우수자 및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 신입생으로 수학능력시험 성적우수자
2. 전국 단위 대회에서 체육, 예능부문 입상자
3. 그 밖에,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의 기준 및 선발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**제13조(장학생 선발인원)** 장학생의 정원과 배정비율은 운용기금 재원의 범위 안에서 매년 위원회에서 정한다.

**제14조(장학금 지급)** ① 장학금의 지급은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과 출연금 등 수익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.

② 장학금의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**제15조(장학금 지급의 정지)**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.

1. 퇴학, 자퇴,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
2. 타 시·군으로 전학하였을 때
3. 그 밖에 장학생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
**제16조(관계규정의 준용)**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및 「성주군 재무회계 규칙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**제17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규정)** 이 조례 시행 당시 「성주군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」에 따라 관리하고 있던 성주군 교육발전기금은 성주군별고을장학기금으로 조성된 걸로 본다.